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35
----------	-----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5년 6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라. 상정결과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가. 제안이유

-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14.7.29. 시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문화진흥법」 별칙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근거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제3조 및 제6조).
- (2)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
-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3)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규제대상 아님)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발생 가능성 없음)
- (4) 기타
  - 입법예고(2015.3.20. ~ 4.8.) 결과 : 의견요약서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14.7.29. 시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문화진흥법」 별칙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근거법령 변경 관련 검토

-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인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동 개정안은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외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도 근거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지구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본 검토보고서 8쪽 수정의견 참조).

### <인용법령 이관 현황>

법령인용 조례 조항	인용법령 조항	
	종전	현행
제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2조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2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
제2조제2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3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조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6조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제3호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3항제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현행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은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로, 과태료의 상한선을 1천만원으로, 부과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조항>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동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과 과태료 부과 요건,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절차는 「질서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었음.

##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 신설 조항>

-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부 칙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과 조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조례가 해당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조치도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동 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조례의 내용을 주민이 숙지하고 행정기관도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나

동 개정안이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것을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내에 지정된 문화지구가 인사동과 대학로 2개이며,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정해 운영하는 문화지구는 인사동이 유일하므로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만 알리면 되는 만큼

그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임.

다만, 본 개정안의 실질적인 내용상의 개정은 과태료 규정 신설이 유일하므로 부칙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과 별도로 두는 것보다 조례의 시행일 자체를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됨.

### <안 부칙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

### 라. 조문 정비 관련 검토

- 그 외 동 개정안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역>

조례 조항(현행)	현행 조문	개정안 조문
제3조제1항	작성하고자 하는	작성하려는
제3조제2항	듣고자 하는	들으려는
	비치	보관
	공람	열람
제3조제2항제2호	공람	열람
제3조제5항	제5조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제4조제1항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하려는
제6조제1항	하고자 하는	하려는
제8조제1항	국가 또는 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제8조제3항	반기 종료 후	반기가 끝난 후
제9조제3항	해촉된다	위촉 해제된다
제9조제4항	소집하고자 할 때	소집하려는 때
	부 의사항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마. 기타 수정의견

- 동 개정안은 2003년 9월 25일 개정 시 삭제되어 비어있는 제7조를 현행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끌어올려 조번호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현행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근거로 하거나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와 서식을 모두 수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2003년 9월 25일 개정 이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문화지구운용계정을 설치하여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는 조례의 연혁 또한 묻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번호 정비의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취지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또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전부개정이 아니면 조나 항이 비어있더라도 아래 조나 항을 끌어올리지 않고 조나 항을 신설할 때에도 기존 조나 항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신설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자치구 기금”으로 약칭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기금의 “운용”과 “운영”을 혼용하고 있는 안 제7조(현행 제8조)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7조(현행 제8조)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로부터 문화지구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자치구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자치구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 ----- ----- -----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기금운영 ----- ----- 반기가 끝난 후 ----- ----- -----</p>	<p>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운영 ----- ----- -----</p> <p>③ ----- 자치구 기금 운영 ----- 반기가 끝난 후 ----- -----</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과태료 조항 신설이 비록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치라고는 하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여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35
----------	--------

제안연월일 : 2015년 7월 1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과태료 조항 신설이 비록 상위법령위 위임에 의한 조치라고는 하나 새로운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여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함(안 부칙 제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운영”을 “자치구 기금 운용”으로 하고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 부칙을 삭제하고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 ----- ----- -----.</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영</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 자치구청장 -----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 -----.</p> <p>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p>	<p>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p>	<p><del>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del> ----- ----- -----.</p>	
<p>제3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시켜야 한다.</p> <p>1. (생략) 2. <u>공람일시</u> 및 장소</p>	<p>제3조(관리계획) ① ----- 작성하려는 ----- 영 제17조제1항-----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 제17조제2항----- 들으려는 ----- ----- ----- 보관- - 열람-----.</p> <p>1. (현행과 같음) 2. <u>열람일시</u> -----</p>	<p>제3조(관리계획)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③ 구청장은 <b>시장</b>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시장·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에 <b>의하여</b>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③ -----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따라</u> ----- -----</p>	
<p><b>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b>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b>변경하고자 하는</b>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b>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b> ① ----- ----- ----- <u>변경하려는</u> ----- ----- -----</p>	<p><b>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b> (개정안과 같음)</p>
<p><b>제6조(문화지구 안 행위제한)</b> ① 문화지구 안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p>	<p><b>제6조(문화지구 안 행위제한)</b> ① ----- -----</p>	<p><b>제6조(문화지구 안 행위제한)</b>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u>하고자 하는</u> 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p> <p>② <u>법 제8조제4항제3호 및 영 제11조제2항</u>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p>	<p>----- ----- ----- ----- <u>하려는</u> ----- ----- ----- ----- ----- -----</p> <p>② <u>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u>----- ----- ----- ----- ----- ----- -----</p>	
<p><u>제7조 삭제(2003.09.25.)</u></p>	<p><u>&lt;삭제&gt;</u></p>	<p><u>제7조 (현행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u>국가 또는 시</u>로부터 문화지구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자치구 기금의 조성·용도 및 <u>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u>자치구기금운영</u>에 관한 사항을 매 <u>반기 종료 후</u>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 ----- ----- ----- <u>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기금운영</u> ----- <u>반기가 끝난 후</u> ----- -----.</p>	<p>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u>운영</u> ----- -----.</p> <p>③ ----- <u>자치구 기금 운영</u> ----- <u>반기가 끝난 후</u> ----- -----.</p>
<p>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u>해촉된다</u>.</p> <p>④ 위원장은 회의를 <u>소집하고자 할 때에는</u> 회의의 일시·장소 및 <u>부의사항</u>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p>	<p>제8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위촉 해제된다</u>.</p> <p>④ ----- <u>소집하려는 때</u> ----- ----- <u>회의에 부치는 사항</u> -----</p>	<p>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 -----.</p>	
<p>제10조(주민협의회) (생략)</p>	<p>제9조(주민협의회) (현행과 같음)</p>	<p>제10조(주민협의회)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시행규칙) (생략)</p>	<p>제1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
<p>&lt;신설&gt;</p>	<p>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제12조(과태료)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p>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을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영 제5조제2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고자 하는”을 “작성하려는”으로 하고, “영 제6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듣고자 하는”을 “들으려는”으로 하며,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공람”을 “열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공람일시”를 “열람일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4항제3호 및 영 제11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시”를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구 기금운영”을 “자치구 기금 운용”으로 하고, “반기 종료 후”를 “반기가 끝난 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촉된다”를 “위촉 해제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집하고자 할 때”를 “소집하려는 때”로 하며,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문화예술진흥법</u>」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u>지역문화진흥법</u>」 제18조, ----- ----- ----- ----- ----- ----- -----.</p>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u>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u>문화예술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권장시설”이라 함은 「<u>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영 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p>	<p><b>제2조(용어의 정의)</b> ----- -----.</p> <p>1. ----- ----- <u>자치구청장</u> ----- 「<u>지역문화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p> <p>2. ----- 「<u>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u>」 <u>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 -----.</p>
<p><b>제3조(관리계획)</b>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u>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 5. (생략)</p>	<p><b>제3조(관리계획)</b> ① ----- <u>작성하</u> <u>려는 ----- 영 제17조제1항</u>----- ----- -----.</p> <p>1.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u>듣고자 하는</u>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u>비치</u> 하여 <u>공람</u>시켜야 한다.</p> <p>1. (생략)</p> <p>2. <u>공람일시</u> 및 장소</p> <p>③ 구청장은 <u>시장</u>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시장·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에 <u>의하여</u>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② ----- - <u>제17조제2항</u>----- <u>들으려</u> <u>는</u> ----- ----- ----- <u>보관</u> ----- - <u>열람</u>-----.</p> <p>1. (현행과 같음)</p> <p>2. <u>열람일시</u> -----</p> <p>③ -----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따라</u> ----- -----.</p>
<p>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u>변경하고자 하는</u>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 ----- ----- <u>변경하려는</u> ----- ----- -----.</p>
<p>제6조(문화지구 안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 안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u>하고자 하는</u> 자는 해당</p>	<p>제6조(문화지구 안 행위제한) ① ----- ----- ----- ----- ----- ----- <u>하려는</u> -----</p>



현 행	개 정 안
<p>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p>	<p>----- ----- ----- ----- -----.</p>
<p>② 법 제8조제4항제3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에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p>	<p>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 ----- ----- ----- ----- -----.</p>
<p>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u>국가 또는 시</u>로부터 문화지구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자치구 기금의 조성·용도 및 <u>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u>자치구기금운영</u>에 관한 사항을 매 <u>반기 종료 후</u>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 ----- ----- ----- ----- <u>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u> ----- ----- -----.</p> <p>② ----- <u>운영</u> ----- -----.</p> <p>③ ----- <u>자치구 기금 운영</u> ----- -- <u>반기가 끝난 후</u> ----- -----.</p>
<p>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u>해촉된다</u>.</p>	<p>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위촉 해제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④ 위원장은 회의를 <u>소집하고자 할 때에는</u> 회의의 일시·장소 및 <u>부의사항</u>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 <u>소집하려는 때</u> -----  ----- <u>회의에 부치는 사항</u> -----  -----  -----  -----.</p>
<p>&lt;신설&gt;</p>	<p>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라 함은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4. “전통문화상품인증제”란 문화지구 내 고미술품점(골동품 포함), 표구사, 필방 및 지업사, 공예품점 등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

추고 있는 권장시설에 대한 공인화 및 차별적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업소의 상품에 대한 인증제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영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직 및 주민협회의 지원 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4. 당해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당해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 열람시켜야 한다.

1. 관리계획안의 개요
2. 열람일시 및 장소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시장·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 이외에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용자
3.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용자

4.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 상품 개발, 전통문화상품인증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②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용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용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조건·절차와 제3항의 금리차액의 보전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지구 안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 안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는 별표와 같다.

#### 제7조 삭제(2003.09.25.)

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지구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치구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관계공무원, 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 안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부



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